

제281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8.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8월 30일  
전문위원 허 은 옥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79
- 나. 발 의 자: 정정희 의원 외 8명
- 다. 발의일자: 2021년 8월 10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8월 18일

## 2. 제정이유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와 건전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운영계획(안 제3조)
- 다. 기능, 구성, 선출방법, 임기, 의원의 사퇴(안 제4조 ~ 안 제8조)
- 라.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안 제9조, 안 제 10조)

마. 회의, 의안의 발의·제출, 의견반영, 지원 등(안 제11조 ~ 안 제 15조)

바. 사무국의 설치, 표창, 준용, 시행규칙(안 제16조 ~ 안 제 1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3조1, 제5조의2, 제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나. 예산조치: 2022년 본예산 편성필요

다. 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1. 8. 17. ~ 8. 22.)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우리구 아동·청소년 정책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의 운영을 간접체험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와 같이 9세 이상 24세 이하

인 사람으로 하고,

-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된 의회를 말하며,
  - “청소년 유권자”는 구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소년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사전에 청소년의회 사무국에 등록한 투표권자를 말함.
- 안 제3조는 운영계획으로 구청장이 수립·시행하고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일정, 추진방법, 절차, 심의 안건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는 청소년의회의 기능으로 청소년의회는
- 구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 참여위원회<sup>1)</sup>와의 교류
  -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또는 구청장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청소년의회의 구성으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청소년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와 제7조는 선출방법과 임기로 청소년 의원은 공개 모집하되, 사전에 청소년 유권자 등록 신청을 받아 매년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

1)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로 기능 등 일부 역할이 중복 됨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함.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의 임기의 중복이 발생하며, 연임을 허용할지 제한할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는 의원의 사퇴에 관한 사항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주, 전학 또는 학업, 건강, 국외체류 등 개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는 의장단의 구성으로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
- 안 제10조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한명의 의원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도록 함.
- 안 제11조는 회의로 연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의장, 구청장, 청소년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2조는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청소년의원, 상임위원회, 구청장이 발의·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 의원이 발의할 경우 재적이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였음.
- 안 제13조는 상임위원회의 회부로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며,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치도록 함.
-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청소년의회의 의견반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청소년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의회 지원사항

- 의원증, 배지, 비품, 장소제공 등 청소년의회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 국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 방문 및 견학
-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 청소년의회 활동 지원 조직 운영 실비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 청소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6조는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의회의 활동지원과 의안 검토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부서 내에 청소년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청소년의원의 임기 만료 시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의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그 밖에 회의의 운영, 안건의 제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다. 종합의견

-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강서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를 두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사전에 등록된 투표권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청소년의원으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 의장1명, 부의장2명,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 청소년 의원 또는 구청장이 발의·제출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기존의 1일 체험형 모의의회와는 다른 본격적인 의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의회를 통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본인들의 의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직접선거를 통해 청소년 의원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며,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나 본 조례안에서는 업무담당 부서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관 부서에는 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가능한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도,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운영 중인 아동참여위원회 및 어린이·청소년 의회와 목적과 기능 면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동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비교 -

구분	아동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근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	아동의 참여권 보장	청소년 참여보장 및 민주시민 역량 증진	지방자치 체험통한 민주시민 소양 함양
대상	18세 미만	만 9세 ~ 만 18세	초중고 재학중인 만 19세 미만
인원	50명 내외(현 36명)	20명 이상 30명 이내	학급(학교)단위 신청인원
구성(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	공개모집 후 직접선거	학교의 신청
구성(임원)	위원장1, 부위원장1 간사, 분과위원장	의장1, 부의장2 상임위원장, 간사	의장1,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모의의회 진행에 필요한 인원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1년(연임규정 없음)	1회성
회의	정기-연2회, 임시회-수시	정기-연2회, 임시회-수시	5회 내외(각각 다른 학교)
운영	위탁(강서청소년회관)	직영(아동청소년과)	직영(의회사무국)

- 청소년 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타구 운영사례와 사업을 실제 수행할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타구 청소년의회 운영사례

### □ 아동·청소년의회 관련 조례 제정현황

구분	시행일	담당부서	구성형태	구성인원	선발방법	위탁여부
강서구(안)		아동청소년과	상시	30명	공개모집후 직접선거	규정없음
강동구	16.9월	아동청소년과	상시	50명	공개모집 후 직접선거+ 선발	위탁가능
도봉구	20.9월	교육지원과	상시	50명	직접선거+ 선발	위탁가능
강북구	19.11월	청소년과	상시	60명	공개모집, 추천자 중 선발	
광진구	19.9월	교육지원과	상시	30명	공개모집 후 선발	
동작구	17.11월	교육정책과	상시	45명	추천자, 희망자 중 선발	
마포구	21.2월	아동청소년과	상시	50명	학교대표+ 지역대표 선발	교육청과 협약
서대문구	21.1월	의회사무국	상시	50명	공개모집 후 선발	
성북구	12.12월	교육청소년과	상시	55명	학교대표+ 추천자 중 선발	국민대 연계
종로구	21.5월	의회사무국	상시	30명	공개모집 및 추천자 중 선발	위탁가능
서울시	18.1월	의사담당관	1일 체험형			
동대문구	19.7월	의회사무국	1일 체험형			
양천구	19.3월	의회사무국	1일 체험형			
영등포구	18.3월	의회사무국	1일 체험형			

※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2020. 3. 12. 시행)로 1일 체험형 모의의회 운영중  
→ 현재 코로나19로 운영중단

- 우리구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인구수: 약 44,000여명
- 전체인구(577,058명 , 21년 7월 현재) 대비 약 7.6%

##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

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